의안번호	제 301 호
의 결 연 월 일	2015년 월 일 (제 344 회)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5년 11월 23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1

제출연월일 : 2015년 11월 23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각계 각층의 다양한 도민참여를 통한 양방향 소통으로 효율적인 갈등 관리방안 마련

○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

2. 주요내용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마련(안 제5조의5)

-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안 제7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규정 마련(안 제7조의3)

- **위원의 위촉해제 조항 신설**

○ 도민배심원제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 **도민배심원제 운영 조항 신설**

3. 의안전문 :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5. 관계법령 발췌 : 해당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해당하는 자중에서”를 “해당하는 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2조의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 대상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또는 민법상 친족(4촌)등)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의3(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2조의2(도민배심원제 운영) 도는 갈등관리에 관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민배심원제를 운영하며, 도민배심원단은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에 따른 도정 정책자문단으로 대신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성)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구성) ④----------해당하는 자 중에서 ---------- ⑤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신 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 대상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관계 (또는 민법상 친족(4촌)등)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3(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도민배심원제 운영) 도는 갈등관리에 관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민배심원제를 운영하며, 도민배심원단은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에 따른 도정정책단으로 대신한다.